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 필요하지만 세심한 기준 마련해야” 언론중재위, 세미나에서 “사이버상 혐오·모욕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논의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혐오나 모욕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이 성숙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2016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8월 23일, 24일 양일 동안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언론사, 법조계,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세션1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원인과 법적 쟁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혐오표현의 심각성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개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혐오표현’과 타인에게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증오선동’을 구별하여 집단 명예훼손의 성격을 갖는 ‘증오선동’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혐오표현의 만연은 팍팍한 삶에 대한 분노,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혐오표현을 통해 표출되는 감정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나간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최민연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

소셜미디어 등에 떠도는 혐오표현을 언론이 공인함으로써 혐오표현이 증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를 기술하는 언론인은 사회의 약자들이 처한 ‘혐오’라는 위험에 대해 감수성과 공감능을 바탕으로 문제적 혐오표현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세션2 ‘모욕과 풍자 사이, 판례로 보는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제5중재부 중재부장)

소셜미디어나 댓글에 나타나는 모욕표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적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나 댓글 등의 표현행위자가 이의신청과 같은 규제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위법한 표현에 대해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이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방법을 통해 모욕표현의 한계를 두고 있지만, 형사법적으로 모욕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자가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터넷상 표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각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가처분을 통하여 일정한 조치를 강제하는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토론 중에는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혐오표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선동적 표현에 한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유럽 등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를 참고하되,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모욕표현의 규제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하는 것을 국가적 개입의 관점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